



보도	2023.10.12.(목) 조간	배포	2023.10.11. (수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민생금융국	책임자	팀 장	김경환	(02-3145-8285)
	불법사금융대응2팀	담당자	선 임	김유진	(02-3145-8526)

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!

-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불법 유사수신 업체 사기 수법 특징 및 대응요령 -

주요 내용

- 최근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가장 높은 비중*을 차지하는 등 어르신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
* '23년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 중 60세 이상 36.5%, 30대 18.9%, 50대 17% 順

-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'은퇴 박람회'(현장 투자설명회) 등을 통해 접근을 하거나,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'평생 연금'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면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고 있습니다.
- 또한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히 '모집수당'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, 어르신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'가짜 지급보증서'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속기 쉬우므로 **각별한 주의**가 필요합니다.

<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

- ① 가족, 가까운 지인이 원금 보장, **모집수당**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**불법 유사수신 사기**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!
- ② **현장 투자설명회**를 통해 장래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**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**하세요!
- ③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**확정 배당금**을 제공한다고 현혹하는 경우 **불법 유사수신** 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세요!
- ④ **금융회사를 사칭**하면서 **지급보증서**를 제공하는 경우 **제도권 금융회사 여부**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!
- ⑤ **불법 유사수신 업체**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**신고**해주세요!

1.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 수법 특징

※ '22.1월~'23.6월 기간 중 금융감독원 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에 접수된 피해신고 제보건 중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 수법 특징을 분석한 내용임

① **(오프라인 투자설명회 활용)**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선호한다는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도유망한 사업*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현혹

* 주로 일반인들이 검증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사업내용을 내세움

② **(모집수당을 미끼로 유인)** 어르신들은 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 또는 가족 등의 말을 별다른 의심없이 믿고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

○ 투자설명회 참석자, 기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*을 주면서 주변 지인, 가족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

*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

③ **(조합 사업 가장)**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·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

* 관련 법령(「협동조합기본법」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)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조합이라 할지라도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 등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

④ **(평생 '연금'처럼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현혹)**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(배당금)을 지급*한다며 어르신들을 현혹

* 실제로 일정기간은 약속한 확정수익을 지급하며 믿음을 주어 지급한 배당금도 재투자를 이끌어냄

⑤ **(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)** ◎◎투자금융, ▲▲보증금융, ◆◆인베스트 등 금융업 유사상호*를 사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도용하는 등 어르신들이 금융회사로 오인할 우려가 높음

* 일부 유사수신 업체는 정식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하기도 함

○ 또한, 이들은 어르신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가짜 지급보증서*를 교부**

* 제도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

** 투자금과 가짜 지급보증서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이중 편취

⑥ (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현혹) 코인 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불법 업체가 만든 **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**(~페이, ~월렛) 등을 이용하여 **코인·캐쉬·포인트**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**현혹**

- 막상 지급된 코인 등을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 오류, 전산 장애 등을 핑계대며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**잠적**하고 투자금을 **편취**

II. 주요 피해 사례

(사례1) 현장 투자설명회 개최 및 조합 사업 가장

- ◆ 피해자 A씨는 은퇴 후 귀농에 관심이 있어 대형 컨벤션에서 개최하는 '귀농 박람회'에 참석
 - 동 박람회에서 **홍보부스를 운영하던 ○○○영농조합은 1구좌(6,000만원)를 투자하면 인삼 재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월 100만원 연 1,2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현혹**
 - 투자금은 3년후에 전액 반환(100% 원금보장)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●●보증금융사(사칭)의 **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해준다고 함**
 - 피해자 A씨는 **영농조합의 확정 배당금, 가짜 지급보증서 등에 현혹** 되어 은퇴자금 중 일부인 6,000만원을 투자
 - 이후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두절

고령층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

영농조합이 확정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현혹

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가짜 지급보증서 발급

거액의 은퇴자금 투자

연락두절 및 투자금 편취

[조합 사업 가장 사례]

확정 배당을 약속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 사례

창립회원 모집

매월 배당금(100만원) 지급

★투자금 3년후 전액 반환★
(금융권 지급보증 증권 발행)

100% 원금보장

가짜 지급보증서 발행

■■■■ 협동조합 가입신청서

주인등록번호	
이름	
직업	
주민등록번호	
주소	
전화번호	
가입사실	내담금이 있습니다.
입부서류	신청을 위한 동의서
회비 납부안내	회비: 월 100만원 (월 100만원)

■■■■ 협동조합

(사례2) 금융회사 유사 상호 사용 및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

- ◆ 피해자 B씨는 '23.3월경 지인의 소개로 C업체의 투자설명회에 참석
 - C업체는 친환경 종이 판매 및 해외 선물 거래 등으로 **확정수익**을 낼 수 있으며 **원금을 보장**하기 위해 ◎◎투자금융회사의 **지급보증서**를 발급해준다고 하며 거액 투자를 유도
 -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**피라미드 형태**의 다단계로 **직급별 수당**을 지급한다고 하며 **지인 소개**를 권유
 - B씨는 ◎◎투자금융회사의 **상호 및 홈페이지** 등을 보고 **정식 금융회사**로 오인하여 **가짜 지급보증서**를 믿고 **은퇴자금 일부인 2,600만원** 투자 및 **보증서 발급 수수료 130만원** 납입
 - B씨는 **고액의 소개 수당**을 지급한다는 말에 **현혹**되어 **가족 포함 총 7명**(투자금 약 2억1천만원)을 소개
 - 이후 사업 진행이 되지 않자 **연락**을 시도하였으나 '23.6월 C업체 및 ◎◎투자금융회사는 **연락이 두절**

금융회사 유사 상호 사용 및 가짜 지급보증서로 현혹

모집수당을 미끼로 현혹

가짜 지급보증서를 믿고 은퇴자금 투자 및 보증수수료 납부

지인(고령층) 소개

연락 두절 및 투자금 편취

[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및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사례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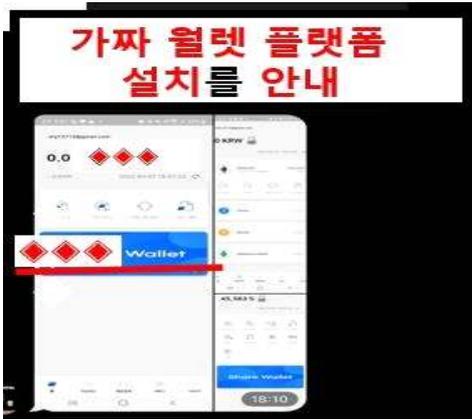
[허위 보증업체 홈페이지 예시]



(사례3)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수익을 실제로 주는 것처럼 현혹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피해자 D씨는 '22.5월경 지인의 소개로 ◆◆◆조합의 직원 E를 소개 받아 현장 투자설명회에 참석 	설명회 개최 및 조합사업 가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E씨는 쇼핑몰 플랫폼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낸다고 홍보하면서 평생 연금처럼 매월 확정 수익금(매일 0.2% 수익을 복리로 지급)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 	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로 고액의 직급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지인 소개를 권유 	모집수당을 미끼로 현혹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D씨는 ◆◆◆조합 사업을 믿고 은퇴자금 일부인 3,000만원을 투자 	거액의 은퇴자금 투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◆◆◆조합은 수개월간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업체가 개발한 ◆◆◆월렛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체 개발 캐쉬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통보 	자체 개발 코인, 캐쉬 지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후 현금화하려고 하자 전산장애 등을 사유로 차일피일 연락을 피하다가 연락이 두절 	연락 두절 및 투자금 편취

[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수익을 실제로 주는 것처럼 현혹하는 사례]

<p>홈페이지상 표시되는 수익금 잔고</p>	<p>자체 개발 코인을 지급한다고 공지하는 사례</p>
	

III .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

- ① 가족, 가까운 지인이 원금 보장, "모집수당"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!

- 가족, 가까운 지인 등의 고수의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, 소중한 은퇴자금을 손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
 -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다단계 방식을 많이 사용하므로
 -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모집수당 등을 제공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결부된 경우 더욱 유의할 필요*
- * 유사수신 업체는 높은 모집수당을 미끼로 제공하여, 모집인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가족, 지인에게 접근하여 투자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

- ② "현장 투자설명회"를 통해 장래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!

- '고수익(High return)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(High risk)이 따른다'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
 - * 고수익-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체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며, 절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
- 특히,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어르신들에게 생소한 가상자산, 신기술 등 일반인들이 확인·검증하기 어려운 사업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

③ "조합" 사업을 가장하여 **확정 배당금을 제공한다고 현혹하는 경우 **불법 유사수신** 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세요!**

□ 생활주변에서 협동조합, 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음

□ 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설립 신고*를 해야하며,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금 및 확정 배당**을 약속하면서 출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

*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,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

** 조합은 매년 결산(총회 승인사항)을 거쳐 손실금과 임의적립금, 법정적립금을 먼저 보전하고 남은 경우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 가능

④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"지급보증서"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!

□ 지급보증서는 반드시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영위*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급 받아야 함

* 은행, 여신전문금융회사, 증권회사, 보증보험사(일반 보험사는 불가) 등은 지급보증이 가능

○ 또한,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*

*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fine.fss.or.kr)에서 조회 가능

□ 한편, 일부 허위 지급보증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도용하며 **가짜 지급보증서**를 제공하고 있어, 불법 유사수신 사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보증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*할 필요

*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문의

⑤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주세요!

-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,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
- 특히,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(녹취, 문자메시지 등)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*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

* 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→민원.신고→불법금융신고센터→불법사금융·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

IV.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어르신들의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*를 실시할 예정(10~12월 중)

*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, 노인복지관 및 어르신 대상 행사를 활용하여 동영상 송출, 포스터 부착, 리플렛 배포 등을 진행할 예정